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94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임의자 · 강승규 · 이달희
조지연 · 이인선 · 서일준
이종욱 · 임종득 · 박수민
이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④ (생략)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⑥ ~ ⑨ (생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